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당뇨에 강한 건강보험(갱신형) 1702

나. 보험의 종류: 1형(암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	전기납	만 15세 ~ 6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갱신계약	10년		25세 ~ 90세	
	100세		91세 ~ 99세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한다. 다만, 갱신할 때의 피보험자 가입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최종 갱신한다.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가. 의무부가 특약의 종류 : 무배당 당뇨진단특약(갱신형)

나. 의무부가방법 및 부가한도

: 특약 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부가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형(2대질병보장형)의 경우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형(2대질병보장형)의 경우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한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형(2대질병보장형)의 경우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100세 이상인 경우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약관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2형(2대질병보장형)의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다. ‘가’ 에도 불구하고 1형(암보장형)의 경우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

라. ‘가’ 에도 불구하고 2형(2대질병보장형)의 경우 각각의 진단보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갱신되지 않는다.

(1)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 뇌출혈 진단보장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마. ‘가’ 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한다. 다만, 갱신을 할 때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갱신한다.

바. ‘가’ 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한다.

사.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더 이상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확정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뇌출혈 진단확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더 이상 뇌출혈 진단확정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카.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1) ‘다’ 및 ‘라’에 해당하는 갱신제한사유

(2) ‘바’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3) ‘차’의 갱신계약의 보험료

타.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 동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금 지급으로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특약은 갱신할 수 있다.

14. 기타

가.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나.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경과기간별 해지환

급금 및 만기지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